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정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10. .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정미정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점검 및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근거 마련(안 제명,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 등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여성아동과

라. 입법예고 : 2026. 10. 21. ~ 10. 26.(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조례상 보호·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시장의 관리책임과 정기점검, 민간 참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교육·홍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도 두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의 보호·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민간 지킴이단의 구성·운영 및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도 소규모로 추계되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평화의 소녀상이 추가 설치되거나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설치 개소 및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 방식과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점검,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 및 홍보·계도 등을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 민간 지킴이단을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청결·관리 활동은 월2회. 홍보·계도 등 활동은 연2회로 계획할 경우, 연간 예상되는 비용은 약 816천원으로 예상됨. 이에 연평균 1억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대체하고자 함

소 계	청결·관리 활동	홍보 등 활동	비 고
816천원	576천원 (월2회×12월×2명×12,000원)	240천원 (연2회×10명×12,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평내호평역에 1개소가 설치·운영중이며, 청결·관리업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향후 「평화의 소녀상」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 확대 및 운영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배진위